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2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이학영 · 박해철 · 이해민
허종식 · 김태선 · 서미화
박 정 · 이개호 · 윤종균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을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1. 사업자: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

다)를”을 “삭제등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를 각각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수거등을”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사업자”를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로 한다.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거등”을 “수거등 또는 삭제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수거등의”를 “수거등 또는 삭제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

② -----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

③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

④ -----수거등 또는 삭제등-----

-----.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 물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4.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

-----삭제
등을-----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제품의 수거등 또는 삭제

등의 명령 등) ① -----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
중개자-----
-----수거등
또는 삭제등-----
-----.

1. (현행과 같음)

2. -----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
개자-----

3. 4.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
자-----

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알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거등 또는 삭제등-----

-----.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 또는 삭제등-----
-----수거등 또는 삭제등-----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수거등 또는 삭제등-----

2의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

<p>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1조제1항에 따른 <u>수거등</u>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1의2. ~ 3. (생략)</p> <p>② · ③ (생략)</p>	<p>----- ----- -----.</p> <p>1. -----<u>수거등</u> <u>또는 삭제등의</u>----- -----</p> <p>1의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